(조회기간 : 2016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길동	750101-*****	

■ 2014년도 사용액계 (단위:원)

일반	11,692,064		
전통시장	32,000	인별합계금액	11,826,264
대중교통	102,200		

■ 2015년도 사용액계 (단위:원)

일반		
전통시장	인별합계금액	7,505,715
대중교통		

■ 2016년도 사용내역 (단위:원)

구분	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	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사용액 (전통시장사용액+대중교통사용액)
일반	3,959,940	
전통시장	0	0
대중교통	0	0
인별합계금액	3,959,940	

- 1.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: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. (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)
- 2.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: 추가공제율사용분(체크카드 등·현금영수증·전통시장·대중교통·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)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.
- ※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 : 20161222-00910145



(조회기간 : 2016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길동	750101-*****	

■ 2016년도 사용내역

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
100-00-00***	카드사2	일반	0
100-00-00***	카드사4	일반	3,959,940
100-00-00***	카드사4	전통시장	0
100-00-00***	카드사4	대중교통	0

- 1.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: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. (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)
- 2.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: 추가공제율사용분(체크카드 등·현금영수증·전통시장·대중교통·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)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 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.
- ※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161222-00910145





-2-

(조회기간 : 2016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홍부인	810101-*****	

■ 2016년도 사용내역 (단위:원)

구분	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	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사용액 (전통시장사용액+대중교통사용액)
일반	2,341,230	
전통시장	40,000	
대중교통	46,050	
인별합계금액	2,427,280	

- 1.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: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. (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)
- 2.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: 추가공제율사용분(체크카드 등·현금영수증·전통시장·대중교통·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)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 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.
- ※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161222-00910145





(조회기간 : 2016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홍부인	810101-*****	

■ 2016년도 사용내역

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
100-00-00***	카드사3	일반	1,099,420
100-00-00***	카드사3	전통시장	40,000
100-00-00***	카드사3	대중교통	46,050
100-00-00***	카드사4	일반	1,241,810
100-00-00***	카드사4	전통시장	0
100-00-00***	카드사4	대중교통	0

- 1.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: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. (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)
- 2.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: 추가공제율사용분(체크카드 등·현금영수증·전통시장·대중교통·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)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 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.
- ※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161222-00910145



